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 및 보급 의무 부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00호)

2026. 3.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 및 보급 의무 부과(안 제29조제4항 신설) ..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영교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위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 및 보급 의무 부과(안 제29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보급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데,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의 학기 시작 전 적시 제작·보급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¹⁾」이 회부되어 제432회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02.26.)에서 심사하였고²⁾,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안 대비표]

현 행	소위원회 심사결과	서영교의원안
제29조(교과용 <u>도서</u>)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u>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교과용 <u>도서</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⑤ <u>교육부장관은 제4항</u>	제29조(교과용 <u>도서</u>)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의안번호 5397(백승아의원 대표발의)

2)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되었음.

	<u>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u> <u>⑥ 교과용 도서의 저작 ·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 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